#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검토보고서·····50면
○ 군정 질문 답변서·····67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1. 26.(화)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 제 3 차 본 회 의 제 출 의 안

| 〈 의 안 목 록 〉 | 〈 제 출 자 〉 |
|---|---|
|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2.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3.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4.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5.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6.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7.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8.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 ·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마을단체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위탁 대상(신규) 시설물 현황

1) 시설물 현황

| 사업명 | 시설명 | 면적(㎡) | | 주소 | 주요시설 | 비고 (사업참여마을단체) |
|---|---|---|---|---|---|---|
| | | 대지 | 건 축/ 연면적 | | | |
| 경북형 농촌재생 뉴딜사업 | 문명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 603 | 106.50 / 106.14 | 용암면 문명리 437-4, 437-8 | 주방, 화장실, 회의실 | 귀농·귀촌 상생 플랫폼 문명 조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경환) |

2) 수 탁 자 : 귀농·귀촌 상생 플랫폼 문명 조성사업 운영위원회

3) 민간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4)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위 탁 료 : 없음

6) 위탁사무

- 시설물 운영·관리 일체
-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민원사항 해소 등

7) 예산지원 : 해당없음 (‘24년도 기준)

## 3. 향후계획

| | |
|---|---|
| 가. 민간위탁 운영 의회 동의 | 2024. 12. |
| 나.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12. |
| 다. 위탁관리 운영 | 2025. 1. |

## 4. 참고자료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8조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 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 관리 조례

**제8조(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읍장 · 면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제10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 4. 작성자

미래전략과 공간개발팀장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의 안<br>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 1. 제안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 주요내용

가.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및 전문단체에 관리위탁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성주역사충절공원
- 위 치 :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28-6
- 시설규모 : 부지면적 6,497㎡, 건축면적 584.32㎡(연면적 618㎡)

| 시설명 | 면적(㎡) | 수량 | 시설명 | 면적(㎡) | 수량 |
|---|---|---|---|---|---|
| 사당 | 54.53 | 1 | 문루 | 1・2층<br>각 47.92 | 1 |
| 내삼문 | 15.42 | 1 | 전시관 | 108.90 | 1 |
| 전사청 | 17.63 | 1 | 관리사 | 59.40 | 1 |
| 강당 | 111.09 | 1 | 화장실 | 41.85 | 1 |
| 동재 | 54.17 | 1 | 비각 | 5.88 | 1 |
| 서재 | 54.17 | 1 | 협문 | - | 2 |

※ 민간위탁기간 : 2019. 1. ~ 2024. 12.

다. 관리위탁계획

❍ 수탁자 선정 :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이용(최고입찰가)

❍ 위탁업무 :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등 제반사항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성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주소가 성주군에 있는 개인

❍ 주요 계약내용

- 계약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 위탁료, 지도·감독
- 안전관리 등 법령 준수 의무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법령 발췌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한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성주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 4. 작성자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장

#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br>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명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위탁

나. 민간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 규 모 : 부지 9,798㎡ 건물 3,304㎡(지하1층～지상3층)

다. 수탁자 선정방식

- 최초위탁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재 위 탁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3.2.21.)

라. 민간위탁기간 : 5년

※ 현 수탁자 :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 김기진)

- 최 초(1차) : 2013 .4. 1. ~ 2018. 3. 31.(5년)
- 재위탁(2차) : 2018. 4. 1. ~ 2023. 3. 31.(5년)
- 재위탁(3차) : 2023. 4. 1. ~ 2028. 3. 31.(5년)

마. 위탁사무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의 3대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 기타 군과 협의한 특수사업 및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바. 예산지원 : 금 1,367,200천원정도/년(도비보조사업 포함, ‘25년도 기준)

## 3.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다.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관한 임금·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사업 지침을 준용함.

나.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름

2. 비용추계의 전제 ※ ‘25년도 기준

□ 예산액 : **1,367,200천원(도 26,160 군 1,141,040 소 200,000)**

가. 인건비 : 735,805천원

- 시설장 : 5,405,200원 × 1명 × 12개월 = 64,863천원
- 부 장 : 5,009,100원 × 1명 × 12개월 = 60,109천원
- 과 장 : 3,960,070원 × 2명 × 12개월 = 95,042천원
- 사회복지사 등 : 2,643,910원 × 9명 × 12개월 = 285,542천원
- 기타수당(휴일근무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 109,934천원
- 사회보험료 : 68,475천원
- 퇴직적립금 : 51,840천원

나. 운영비 : 631,395천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 86,775천원
- 시설비(자산취득비 및 유지보수비) : 56,063천원
- 사업비(온동네 스무바퀴, 애지중지사업 등) : 488,557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 - |
| 세출 | 인건비 | 700,302 | 735,805 | 750,521 | 765,532 | 780,842 | **3,733,002** |
| | 운영비 | 466,898 | 631,395 | 644,023 | 656,903 | 670,041 | **3,069,260** |
| | 소 계 | 1,167,200 | 1,367,200 | 1,394,544 | 1,422,435 | 1,450,883 | **6,802,262** |
| □ 총 비용 | | -1,167,200 | -1,367,200 | -1,394,544 | -1,422,435 | -1,450,883 | **-6,802,262**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도비 | 26,160 | 26,160 | 26,160 | 26,160 | 26,160 | 130,800 |
| 군비 | 1,141,040 | 1,141,040 | 1,168,384 | 1,196,275 | 1,224,723 | 5,871,462 |
| 기타 |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800,000 |
| **합계** | **1,167,200** | **1,367,200** | **1,394,544** | **1,422,435** | **1,450,883** | **6,802,262** |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항목 | 금액 | 산출기초 | 비고 |
|---|---|---|---|---|
| **계** | | **1,367,200** | | |
| **인건비** | 기본급 | 505,556 | 시설장 : 5,405,200원 × 1명 × 12개월 = 64,863천원<br>부 장 : 5,009,100원 × 1명 × 12개월 = 60,109천원<br>과 장 : 3,960,070원 × 2명 × 12개월 = 95,042천원<br>사회복지사 등 : 2,643,910원 × 9명 × 12개월 = 285,542천원<br><br>※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
| | 제수당 | 109,934 | 시간외수당 : 370,700원 × 12명 × 12개월(월15시간)<br>= 53,381천원<br>명절수당 : 1,939,730원 × 13명 × 2회 = 50,433천원<br>가족수당 : 510,000원 × 12개월 = 6,120천원 | |
| | 사회보험<br>부담금 | 68,475 | 건강보험 2,073,750원 × 12개월 = 24,885천원<br>국민연금 2,330,920원 × 12개월 = 27,971천원<br>고용보험 906,420원 × 12개월 = 10,877천원<br>산재보험 395,160원 × 12개월 = 4,742천원 | |
| | 퇴직<br>적립금 | 51,840 | 퇴직적립금 51,840천원 × 1회 = 51,840천원 | |
| | **소 계** | **735,805** | | |
| **운영비** | **운영비** | 86,775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7,231,250원 × 12개월 = 86,775천원 | |
| | **시설비** | 56,063 | 자산취득비 및 유지보수비 4,671,920원× 12개월 = 56,063천원 | |
| | **사업비** | 488,557 | 사업비(프로그램비) 40,713,080원 × 12개월 = 488,557천원 | |
| | **소 계** | **631,395** | | |

##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 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 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 운영 · 사업 · 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①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③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
|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br>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명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
- 면 적 : 1,551㎡

다. 민간위탁기간 : 1년(2025. 1. 1. ~ 2025. 12. 31.)

라.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선정기준 : 반려동물 전담 구조·보호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중 보호센터 운영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마. 위탁사무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 성주군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독려 홍보 업무
- 관내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기타 성주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

바. 예산지원 : 금287,800천원(도 20,700천원, 군 267,100천원)

- 보호센터 운영 : 189,000천원(도 8,700천원, 군 180,300천원)
- 입양센터 운영 : 98,800천원(도 12,000천원, 군 86,800천원)

【붙임】

# 【관 련 법 령】

##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나.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종사자에 관한 임금규정은 ‘2025년 최저임금제도’ 등을 준용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액 : 금287,800천원

□ 사업별 예산액

| 구 분 | 도비 | 군비 | 군비추가 | 합 계 | 비 고 |
|---|---|---|---|---|---|
| 합 계 | 20,700 | 48,300 | 218,800 | 287,800 | |
| 보호센터 | 8,700 | 20,300 | 160,000 | 189,000 | |
| 입양센터 | 12,000 | 28,000 | 58,800 | 98,800 | |

3. 비용추계의 결과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입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 도비 | 20,700 | - | - | - | - | 20,700 |
| | ○ 군비 | 267,100 | - | - | - | - | 267,100 |
| | 소계(b) | 287,800 | - | - | - | - | 287,800 |
| □ 총 비용(a-b) | | -287,800 | - | - | - | - | -287,800 |

4. 재원조달 방안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
| 도비 | 일반회계 | 20,700 | – | – | – | – | 20,700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
| 시・군비 | | 267,100 | – | – | – | – | 267,100 |
| 민간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합계 | | 287,800 | – | – | – | – | 287,800 |

5. 부대의견 : 동물보호법 강화 및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매년 보호센터 운영 소요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작성자 : 산림축산과 축산방역팀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단위 : 천원)

| 구분 | 항목 | 산출내역 | 금 액 | 비고 |
|---|---|---|---|---|
| 합계 | | | 189,000 | |
| 인건비 | 인 건 비 | · 근로자 3,000천원/월 × 2.5명 × 12월 | 90,000 | |
| 사료구입 | 사료구입 | · 45천원(20kg) × 100포/월 × 12월 | 54,000 | |
| 보호센터 운영 | 통신요금 | · 스마트폰, 인터넷 등 150천원/월 × 12월 | 1,800 | |
| | 렌 탈 비 | · 복사기 등 렌탈 500천원/월 × 12월 | 6,000 | |
| | 임 대 료 | · 보호센터 임대 1,400천원/월 × 12월 | 16,800 | |
| | 공 과 금 | · 전기,수도 등 600천원/월 × 12월 | 7,200 | |
| | 소모품 구입 | · 센터 운영 소모품 등 구입 | 13,200 | |

## □ 성주군 반려동물 입양센터

(단위 : 천원)

| 구분 | 항목 | 산출내역 | 금 액 | 비고 |
|---|---|---|---|---|
| 합계 | | | 98,800 | |
| 인건비 | 인 건 비 | · 근로자 2,800천원/월 × 1.5명 × 12월 | 50,400 | |
| 사료구입 | 사료구입 | · 45천원(20kg) × 20포/월 × 12월 | 10,800 | |
| 보호센터 운영 | 통신요금 | · 스마트폰, 인터넷 등 150천원/월 × 12월 | 1,800 | |
| | 렌 탈 비 | · 복사기 등 렌탈 500천원/월 × 12월 | 6,000 | |
| | 임 대 료 | · 보호센터 임대 1,000천원/월 × 12월 | 12,000 | |
| | 공 과 금 | · 전기,수도 등 500천원/월 × 12월 | 6,000 | |
| | 소모품 구입 | · 센터 운영 소모품 등 구입 | 11,800 | |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br>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3길 76-8)

○ 면 적 : 대지면적 1,120㎡(약 340평), 연면적 2,698.30㎡(약 820평)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위탁사무

- 시설물 관리·운영 총괄 및 입주업체 관리 전반
- 관내 기업 고충 처리 및 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 기계 소방 설비 관리 및 방호관리, 시설물 내·외부 미화관리 등

## 3. 향후 추진계획

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5. 1.

나.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 2025. 2.

다. 위탁운영 계약 : 2025. 3.

## 4. 참고자료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2항, 동법 시행령 19조2항

나.「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4항, 동법 제6조1항,2항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상 공개 모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종사자에 관한 임금·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통계법」제15조에 근거하여 공표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표준지표를 병행하여 산출하였음.

2. 위탁운영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액 : **161,576천원(군161,576)**

가. 인건비 : 89,730천원

- 센터장 : 4,724.6천원 × 1명 × 12개월 = 56,696천원
- 사무보조 : 2,752.8천원 × 1명 × 12개월 = 33,034천원

나. 운영비 : 71,846천원(① + ② - ③)

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139,480천원

②. 일반관리비 및 이윤 : 19,323천원

③. 총 수 입 : 86,957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 - |
| 세출 | ○ 인건비 | 89,730 | 93,184 | 96,771 | 100,496 | 104,365 | 484,546 |
| | ○ 운영비 | 71,846 | 74,612 | 77,484 | 80,467 | 83,564 | 387,973 |
| | 소계 | 161,576 | 167,796 | 174,255 | 180,963 | 187,929 | 872,519 |
| □ 총 비용 | | -161,576 | -167,796 | -174,255 | -180,963 | -187,929 | -872,519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 도비 | – | – | – | – | – | – |
| 군비 | 161,576 | 167,796 | 174,255 | 180,963 | 187,929 | 872,519 |
| **합계** | **161,576** | **167,796** | **174,255** | **180,963** | **187,929** | **872,519** |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위탁운영 원가분석 결과

(단위 : 천원)

| 구 분 | | | 직영운영(A) | 위탁운영(B) | 차 이(B-A) | 비 고 |
|---|---|---|---|---|---|---|
| 지출 | 인건비 | 기 본 급 | 38,046,936 | 61,230,600 | 23,183,664 | |
| | | 제 수 당 | 16,420,808 | 21,597,232 | 5,176,424 | |
| | | 퇴 직 급 여 | 4,538,980 | 6,902,320 | 2,363,340 | |
| | | **소 계** | **59,006,724** | **89,730,152** | **30,723,428** | |
| | 경비 | 전 력 비 | 68,341,115 | 68,341,115 | - | |
| | | 수도광열비 | 542,879 | 542,879 | - | |
| | | 보 험 료 | 9,137,662 | 10,812,914 | 1,675,252 | |
| | | 복리후생비 | 77,825 | 5,136,423 | 5,058,598 | |
| | | 소 모 품 비 | 80,938 | 80,938 | - | |
| | | 지급수수료 | 8,980,336 | 8,980,336 | - | |
| | | 감가상각비 | 193,400 | 334,200 | 140,800 | |
| | | 수리수선비 | 212,424 | 323,029 | 110,605 | |
| | | 외주용역비 | 44,094,316 | 44,094,316 | - | |
| | | 안전관리비 | 548,763 | 834,490 | 285,727 | |
| | | **소 계** | **132,209,658** | **139,480,640** | **7,270,982** | |
| | **지 출 원 가** | | **191,216,382** | **229,210,792** | **37,994,410** | |
| | 일반관리비 | | 9,560,819 | 11,460,540 | 1,899,721 | 5.0% |
| | 이 윤 | | - | 7,863,081 | 7,863,081 | 4.0% |
| | **총 지 출** | | **200,777,201** | **248,534,413** | **47,757,212** | |
| 수입 | 사용료수입 | | 5,213,464 | 5,151,290 | -62,174 | |
| | 기 타 수 입 | | 82,793,386 | 81,806,251 | -987,135 | |
| | **총 수 입** | | **88,006,850** | **86,957,541** | **-1,049,309** | |
| **총 원 가** | | | **-112,770,351** | **-161,576,872** | **-48,806,521** | **3개년 연평균** |

## 2. 외주용역비

(단위 : 천원)

| 구 분 | | 3개년 평균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비 고 |
|---|---|---|---|---|---|---|
| 인건비 | 기 본 급 | 24,349,560 | 23,512,968 | 24,339,816 | 25,195,896 | |
| | 제 수 당 | 6,143,596 | 5,688,156 | 6,261,204 | 6,481,428 | |
| | 퇴 직 급 여 | 2,541,096 | 2,433,432 | 2,550,084 | 2,639,772 | |
| | **소 계** | **33,034,252** | **31,634,556** | **33,151,104** | **34,317,096** | |
| 경비 | 보 험 료 | 3,224,370 | 3,087,751 | 3,235,776 | 3,349,584 | |
| | 복리후생비 | 90,276 | 87,000 | 90,236 | 93,593 | |
| | 소 모 품 비 | 3,437,723 | 3,312,953 | 3,436,195 | 3,564,021 | |
| | 감가상각비 | 214,782 | 214,782 | 214,782 | 214,782 | |
| | 수리수선비 | 70,788 | 68,219 | 70,757 | 73,389 | |
| | 안전관리비 | 307,219 | 294,201 | 308,305 | 319,149 | |
| | **소 계** | **7,345,158** | **7,064,906** | **7,356,051** | **7,614,518** | |
| **지 출 원 가** | | **40,379,410** | **38,699,462** | **40,507,155** | **41,931,614** | |
| 일반관리비 | | 2,018,971 | 1,934,973 | 2,025,358 | 2,096,581 | 5.0% |
| 이 윤 | | 1,695,935 | 1,625,377 | 1,701,301 | 1,761,128 | 4.0% |
| **총 원 가** | | **44,094,316** | **42,259,812** | **44,233,814** | **45,789,323** | |

#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br>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 1. 제안이유

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나. 민간위탁사무 개요

- 운행차량 : 9대(카니발 8대, 쏘나타 1대)
- 대 상 : 중증보행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 임산부, 영유아 등
- 위탁방식 : 공개모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공고)

다. 기간 : 2년(2024. 1. 1. ~ 2025. 12. 31.)

라. 수탁자 선정방식 :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23.12.14. ~ 12. 15.)

- 현 수탁자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부(대표 : 이재근)

※ 최 초(1차) : 2016. 1. 1. ~ 2017.12. 31.(2년)
재위탁(2차) : 2018. 1. 1. ~ 2019.12. 31.(2년)
재위탁(3차) : 2020. 1. 1. ~ 2021.12. 31.(2년)
재위탁(4차) : 2022. 1. 1. ~ 2023.12. 31.(2년)
재위탁(5차) : 2024. 1. 1. ~ 2025.12. 31.(2년)

- 심의결과 : 가결

마. 보 조 금 : 연 595백만원(교통약자 콜택시 525,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70)

바. 위탁사무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사무관리

## 3. 참고자료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나.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운영관리)

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관 련 법 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삭제 <2024. 2. 20.>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2023. 5. 16.>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 ▣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개정 2023. 12. 28.>
3.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수탁자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⑤ 그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사무원의 임금에 따른 비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준용함.

나.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름.

2. 비용추계의 전제 ※ '25년도 기준

□ 특별교통수단 예산액 : **520,000천원(국 60,000 군 460,000)**

가. 인건비 : 451,440천원

- 운전원 : 2,150,000원 × 8명 × 12개월 = 206,400천원
- 사무원 : 2,150,000원 × 1명 × 12개월 = 25,800천원
- 시간외수당 : 16,000원 × 70시간 × 8명 × 12개월 = 107,520천원
- 기타수당(급량비, 사무원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 55,320천원
- 사회보험료 : 24,000천원
- 퇴직적립금 : 32,400천원

나. 운영비 : 68,560천원

- 제세공과금(자동차세 보험료 등) : 24,000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단말기요금 및 사무용품비) : 1,000천원
- 차량비(차량유류대, 수리비, 부품교체비, 검사료 등) : 43,560천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예산액 : **70,000천원(군 70,000)**

가. 인건비 : 48,608천원

- 운전원 : 2,150,000원 × 1명 × 12개월 = 25,800천원
- 시간외수당 : 16,000원 × 60시간 × 1명 × 12개월 = 11,520천원
- 기타수당(급량비, 사무원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 5,000천원
- 사회보험료 : 2,688천원
- 퇴직적립금 : 3,600천원

나. 운영비 : 21,392천원

- 제세공과금(자동차세 보험료 등) : 3,600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단말기요금 및 사무용품비) : 3,157천원
- 홍보비 : 8,000천원
- 차량비(차량유류대, 수리비, 부품교체비, 검사료 등) : 6,635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세입 | | 76,000 | 60,000 | 80,000 | 80,000 | 80,000 | **376,000** |
| 세출 | 인건비 | 450,500 | 451,440 | 470,000 | 480,000 | 490,000 | **2,341,940** |
| | 운영비 | 75,000 | 68,560 | 75,000 | 80,000 | 85,000 | **383,560** |
| | 소계 | 525,500 | 520,000 | 545,000 | 560,000 | 575,000 | **2,725,500** |
| □ 총 비용 | | -449,500 | -460,000 | -465,000 | -480,000 | -495,000 | **-2,349,500** |

●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세입 | | 35,000 | 0 | 0 | 0 | 0 | **35,000** |
| 세출 | 인건비 | 45,000 | 48,608 | 50,000 | 50,000 | 50,000 | **243,608** |
| | 운영비 | 25,000 | 21,392 | 20,000 | 20,000 | 20,000 | **106,392** |
| | 소계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50,000** |
| □ 총 비용 | | -35,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15,000** |

## 4. 재원조달 방안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도비 | 76,000 | 60,000 | 80,000 | 80,000 | 80,000 | 376,000 |
| 군비 | 449,500 | 460,000 | 475,000 | 480,000 | 485,000 | 2,349,500 |
| **합계** | 525,500 | 520,000 | 545,000 | 560,000 | 575,000 | **2,725,500** |

●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도비 | 35,000 | 0 | 0 | 0 | 0 | 35,000 |
| 군비 | 35,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15,000 |
| **합계**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50,000** |

## 5. 부대의견 : 없음

## 6. 작성자 : 새마을교통과 교통행정팀장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단위 : 천원)

| 구분 | 항목 | 금액 | 산출기초 | 비고 |
|---|---|---|---|---|
| **계** | | **520,000** | | |
| **인건비** | 기본급 | 232,200 | 운전원 : 2,150,000원 × 8명 × 12개월 = 206,400천원<br>사무원 : 2,150,000원 × 1명 × 12개월 = 25,800천원<br><br>※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
| | 시간외 수당 | 107,520 | 시간외수당 : 16,000원 × 8명 × 12개월(월 70시간)= 107,520천원 | |
| | 기타수당 | 55,320 | 명절수당 : 1,300,000원 × 9명 × 2회 = 23,400천원<br>급량비 : 150,000원 × 9명 × 12개월 = 16,200천원<br>가족수당 : 5명, 가족수에 따른 수당 차별 = 4,320천원<br>위험수당 : 50,000원 × 9명 × 12개월 = 5,400천원<br>사무원수당 : 200,000원 × 12개월 = 2,400천원<br>지회장수당 : 300,000원 × 12개월 = 3,600천원 | |
| | 사회보험 부담금 | 24,000 | 건강보험 750,000원 × 12개월 = 9,000천원<br>국민연금 1,000,000원 × 12개월 = 12,000천원<br>고용보험 191,670원 × 12개월 ≒ 2,300천원<br>산재보험 58,330원 × 12개월 ≒ 700천원 | |
| | 퇴직 적립금 | 32,400 | 퇴직적립금 32,400천원 × 1회 = 32,400천원 | |
| | **소 계** | **451,440** | | |
| **운영비** | **제세공과금** | 24,000 | 자동차세 8대 = 4,000천원<br>보험료 8대 = 18,000천원<br>상해보험료 8명 = 2,000천원 | |
| |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 1,000 | 미터단말기 6,000원 × 12개월 × 8대 = 576천원<br>사무용품 및 미터기 용지 = 280천원 | |
| | **차량비** | 43,560 | 차량유류대 100,000원 × 4회 × 8대 × 12개월 = 38,400천원<br>차량검사료 35,000원 ×1회 × 8대 = 280천원<br>오일 180,000원 × 8대 × 3회 = 4,320천원 | |
| | **소 계** | **68,560** | | |

●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단위 : 천원)

| 구분 | 항목 | 금액 | 산출기초 | 비고 |
|---|---|---|---|---|
| **계** | | **70,000** | | |
| **인건비** | 기본급 | 25,800 | 운전원 : 2,150,000원 × 1명 × 12개월 = 25,800천원<br>※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
| | 시간외 수당 | 11,520 | 시간외수당 : 16,000원 × 1명 × 12개월(월 60시간)= 11,520천원 | |
| | 기타수당 | 5,000 | 명절수당 : 1,300,000원 × 1명 × 2회 = 2,600천원<br>급량비 : 150,000원 × 1명 × 12개월 = 1,800천원<br>위험수당 : 50,000원 × 1명 × 12개월 = 600천원 | |
| | 사회보험 부담금 | 2,688 | 건강보험 85,000원 × 12개월 = 1,020천원<br>국민연금 110,000원 × 12개월 = 1,320천원<br>고용보험 22,000원 × 12개월 = 264천원<br>산재보험 7,000원 × 12개월 = 84천원 | |
| | 퇴직 적립금 | 3,600 | 퇴직적립금 3,600천원 × 1회 = 3,600천원 | |
| | **소 계** | **48,608** | | |
| **운영비** | **제세공과금** | 3,600 | 자동차세 1대 = 1,000천원<br>보험료 1대 = 2,500천원<br>상해보험료 1명 = 100천원 | |
| |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 3,157 | 미터단말기 6,000원 × 12개월 × 1대 =72천원<br>사무용품 및 미터기 용지 = 3,085천원 | |
| | **홍보비** | 8,000 | 홍보물 리플렛제작 4,000천원<br>홍보물품 제작비 4,000천원 | |
| | **차량비** | 6,635 | 차량유류대 100,000원 × 4회 ×1대 × 12개월 = 4,800천원<br>차량검사료 35,000원 ×1회 ×1대 = 35천원<br>오일 150,000원 × 1대 × 4회 = 600천원<br>세차비 50,000원 × 2회 × 12개월 = 1,200천원 | |
| | **소 계** | **21,392** | | |

#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br>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 1. 제안이유

선남면 강변야구장 시설관리를 운영 능력을 갖춘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며 운영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선남면 강변야구장

나. 위 치 :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번지 외 27필지

다. 시설내용

- 야구장 2면[마사토구장(1면당 면적 : 97.5m×97.5m=9,506㎡)],
  관리동 1동, 화장실 1동, 급수대 1개, 관정 1개, 안내판 1개, 진입로 400m

라. 위탁사무

- 강변야구장(2면)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업무
-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각종 시설물 관리 등

마. 위탁방식 : 공개모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공고)

바. 위탁기간 및 비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단, 운영실적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최 초 : 2014. 2. 10. ~ 2015. 2. 9.(1년)
  재 위 탁 : 2015. 2. 10. ~ 2015. 12. 31.(10개월)
  재 위 탁 : 2016. 1. 1. ~ 2016. 12. 31.(1년)
  재 위 탁 : 2017. 1. 1. ~ 2017. 12. 31.(1년)
  재 위 탁 : 2018. 1. 1. ~ 2020. 12. 31.(3년)

  ※ 2021. 1. 1. ~ 2021. 12. 31.(1년) 코로나로 인한 위탁 중지

재 위 탁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비용 : 무상위탁(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 3. 참고자료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제24조(위탁관리)

다.「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관 련 법 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선남강변야구장 유지 보수 비용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일부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4.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br>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 1. 제안이유

성주생활체육공원의 시설관리를 운영 능력을 갖춘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며, 운영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성주생활체육공원

나. 위 치 : 성주읍 성산리 1516번지 일원, 대황리 86-1번지 일원

다. 시설내용 : 테니스장 6면, 정구장 3면, 족구장 2면(실내 1면 포함), 게이트볼장 4면, 관리사 3동, 파크골프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라. 위탁사무

- 성주생활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
-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각종 시설물 관리 등

마. 위탁방식 : 공개모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공고)

바. 위탁기간 및 비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단, 운영실적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최 초 : 2016. 1. 1. ~ 2018. 12. 31.(3년)

  · 재 위 탁 : 2019. 1. 1. ~ 2021. 12. 31.(3년)

  · 재 위 탁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비용 : 55,000천원(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 3. 참고자료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제24조(위탁관리)

다.「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관 련 법 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성주생활체육공원 위탁 비용 발생

※ 2025년 당초예산 55,000천원 편성 예정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4.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 2024. 11. 26.(화) |
|---|
|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 의 안 목 록 〉 | 〈 제 출 자 〉 |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 ·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마을단체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위탁 대상(신규) 시설물 현황

1) 시설물 현황

| 사업명 | 시설명 | 면적(㎡) | | 주소 | 주요시설 | 비고 (사업참여마을단체) |
|---|---|---|---|---|---|---|
| | | 대지 | 건 축/ 연면적 | | | |
| 경북형 농촌재생 뉴딜사업 | 문명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 603 | 106.50/ 106.14 | 용암면 문명리 437-4, 437-8 | 주방, 화장실, 회의실 | 귀농·귀촌 상생 플랫폼 문명 조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경환) |

2) 수 탁 자 : 귀농·귀촌 상생 플랫폼 문명 조성사업 운영위원회

3) 민간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4)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위 탁 료 : 없음

6) 위탁사무

- 시설물 운영·관리 일체
-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민원사항 해소 등

7) 예산지원 : 해당없음 (‘24년도 기준)

## 3. 향후계획

| | |
|---|---|
| 가. 민간위탁 운영 의회 동의 | 2024. 12. |
| 나.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12. |
| 다. 위탁관리 운영 | 2025. 1. |

## 4. 참고자료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8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주민이 필요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참여한 운영위원회 중심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1. 제안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 주요내용

가.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및 전문단체에 관리위탁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성주역사충절공원
- 위 치 :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28-6
- 시설규모 : 부지면적 6,497㎡, 건축면적 584.32㎡(연면적 618㎡)

| 시설명 | 면적(㎡) | 수량 | 시설명 | 면적(㎡) | 수량 |
|---|---|---|---|---|---|
| 사당 | 54.53 | 1 | 문루 | 1·2층<br>각 47.92 | 1 |
| 내삼문 | 15.42 | 1 | 전시관 | 108.90 | 1 |
| 전사청 | 17.63 | 1 | 관리사 | 59.40 | 1 |
| 강당 | 111.09 | 1 | 화장실 | 41.85 | 1 |
| 동재 | 54.17 | 1 | 비각 | 5.88 | 1 |
| 서재 | 54.17 | 1 | 협문 | - | 2 |

※ 민간위탁기간 : 2019. 1. ~ 2024. 12.

다. 관리위탁계획

❍ 수탁자 선정 :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이용(최고입찰가)

❍ 위탁업무 :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등 제반사항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성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주소가 성주군에 있는 개인

❍ 주요 계약내용

- 계약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 위탁료, 지도·감독
- 안전관리 등 법령 준수 의무

##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에 대하여「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사무의 내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등의 제반사항으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 1. ~ 2029. 12.까지입니다.

○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및 전문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명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위탁

나. 민간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 규 모 : 부지 9,798㎡ 건물 3,304㎡(지하1층~지상3층)

다. 수탁자 선정방식

- 최초위탁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재 위 탁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3.2.21.)

라. 민간위탁기간 : 5년

※ 현 수탁자 :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 김기진)

- 최 초(1차) : 2013 .4. 1. ~ 2018. 3. 31.(5년)
- 재위탁(2차) : 2018. 4. 1. ~ 2023. 3. 31.(5년)
- 재위탁(3차) : 2023. 4. 1. ~ 2028. 3. 31.(5년)

마. 위탁사무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의 3대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 기타 군과 협의한 특수사업 및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바. 예산지원 : 금 1,367,200천원정도/년(도비보조사업 포함, ‘25년도 기준)

## 3.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다.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의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동의안 제출 시기가 지연되어 향후 동의안 제출 시 시기에 맞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명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
- 면 적 : 1,551㎡

다. 민간위탁기간 : 1년(2025. 1. 1. ~ 2025. 12. 31.)

라.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선정기준 : 반려동물 전담 구조·보호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중 보호센터 운영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마. 위탁사무

-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 성주군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독려 홍보 업무
- 관내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기타 성주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

바. 예산지원 : 금287,800천원(도 20,700천원, 군 267,100천원)

- 보호센터 운영 : 189,000천원(도 8,700천원, 군 180,300천원)
- 입양센터 운영 : 98,800천원(도 12,000천원, 군 86,800천원)

##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에 대하여「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사무의 내용은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유기동물 입양 독려 홍보 및 관내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해·학대 동물의 구조 등의 사업이며,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까지입니다.

○ 반려동물 전담 구조·보호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중, 보호센터 운영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3길 76-8)

○ 면 적 : 대지면적 1,120㎡(약 340평), 연면적 2,698.30㎡(약 820평)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위탁사무

- 시설물 관리·운영 총괄 및 입주업체 관리 전반
- 관내 기업 고충 처리 및 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 기계 소방 설비 관리 및 방호관리, 시설물 내·외부 미화관리 등

## 3. 향후 추진계획

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5. 1.

나.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 2025. 2.

다. 위탁운영 계약 : 2025. 3.

## 4. 참고자료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19조2항

나.「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4항, 동법 제6조1항,2항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군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관내 기업 고충 처리 및 입주기업 유치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나. 민간위탁사무 개요

- 운행차량 : 9대(카니발 8대, 쏘나타 1대)
- 대　　상 : 중증보행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 임산부, 영유아 등
- 위탁방식 : 공개모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공고)

다. 기간 : 2년(2024. 1. 1. ~ 2025. 12. 31.)

라. 수탁자 선정방식 :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23.12.14. ~ 12. 15.)

- 현 수탁자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부(대표 : 이재근)

※ 최　초(1차) : 2016. 1.　1. ~ 2017.12. 31.(2년)
재위탁(2차) : 2018. 1.　1. ~ 2019.12. 31.(2년)
재위탁(3차) : 2020. 1.　1. ~ 2021.12. 31.(2년)
재위탁(4차) : 2022. 1.　1. ~ 2023.12. 31.(2년)
재위탁(5차) : 2024. 1.　1. ~ 2025.12. 31.(2년)

- 심의결과 : 가결

마. 보 조 금 : 연 595백만원(교통약자 콜택시 525,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70)

바. 위탁사무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사무관리

## 3. 참고자료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나.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운영관리)

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1항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사무가 신체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정한 선정 과정을 거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선남면 강변야구장 시설관리를 운영 능력을 갖춘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며 운영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선남면 강변야구장

나. 위　　치 :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번지 외 27필지

다. 시설내용

- 야구장 2면[마사토구장(1면당 면적 : 97.5m×97.5m=9,506㎡)],
  관리동 1동, 화장실 1동, 급수대 1개, 관정 1개, 안내판 1개, 진입로 400m

라. 위탁사무

- 강변야구장(2면)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업무
-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각종 시설물 관리 등

마. 위탁방식 : 공개모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공고)

바. 위탁기간 및 비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단, 운영실적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최　　초 : 2014. 2. 10. ~ 2015. 2. 9.(1년)
  재 위 탁 : 2015. 2. 10. ~ 2015. 12. 31.(10개월)
  재 위 탁 : 2016. 1. 1. ~ 2016. 12. 31.(1년)

재 위 탁 : 2017. 1. 1. ~ 2017. 12. 31.(1년)

재 위 탁 : 2018. 1. 1. ~ 2020. 12. 31.(3년)

※ 2021. 1. 1. ~ 2021. 12. 31.(1년) 코로나로 인한 위탁 중지

재 위 탁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비용 : 무상위탁(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 3. 참고자료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제24조(위탁관리)

다.「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선남면 강변야구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해당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성주생활체육공원의 시설관리를 운영 능력을 갖춘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며, 운영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성주생활체육공원

나. 위 치 : 성주읍 성산리 1516번지 일원, 대황리 86-1번지 일원

다. 시설내용 : 테니스장 6면, 정구장 3면, 족구장 2면(실내 1면 포함), 게이트볼장 4면, 관리사 3동, 파크골프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라. 위탁사무

- 성주생활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
-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각종 시설물 관리 등

마. 위탁방식 : 공개모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공고)

바. 위탁기간 및 비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단, 운영실적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최 초 : 2016. 1. 1. ~ 2018. 12. 31.(3년)

  · 재 위 탁 : 2019. 1. 1. ~ 2021. 12. 31.(3년)

  · 재 위 탁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비용 : 55,000천원(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 3. 참고자료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제24조(위탁관리)

다.「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체육공원의 운영 특성상 전문성 확보인 만큼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 서비스 및 지역 스포츠 사업 추진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군정질문 답변서

【11. 26.(화)】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 【질 문】 여노연 의원

□ 건 명 : 선남 골프장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 질문요지 : 선남 골프장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 골프장 조성 추진 과정에서 2020년 8월 선남 골프장 조성·운영 사업협약 체결을 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2022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음. 이에 우리군은 2022년 10월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11월 협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되어 2023년 8월 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 결과 패소하여 항소를 한 상황임.

이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항소의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함.

(도시계획과장)

## 【답 변】 도시계획과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골프장 조성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군 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점사업임을 늘 강조해 오신 여노연 의원님의 “선남 골프장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계획” 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우리군이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2024년 8월 16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군에서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및군 고문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원심 판결에서 군계획시설사업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상 남측 9홀 우선시행과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단계적 사업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추진 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또 다른 법적분쟁을 막기 위하여 2024년 8월 상고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사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고기각 즉 우리군 패소 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선남대방씨씨의 남측 9홀 우선 시행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국토계획법의 법률적 문제 등 각종 변수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승소 시에는 6차 공모에 이르기까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시 꾸준히 제기된 사유지 확보 등 현안 문제들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유사업무 수행 시 본 사업과 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